

13.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(재계약)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19년 2월 28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
- 회부일자 : 2019년 3월 4일
- 상정일자 : 제26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문화복지위원회(2019년 3월 20일)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)

□ 제안이유

-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민간위탁 중인 “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”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시의회 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위탁시설 개요
 - 소재지 : 달서구 월배로 319(송현동)
 - 설치일 : 2013. 9. 2.
 - 규모 : 253m²(사무실, 상담실, 심리치료실, 회의실, 진술녹화실 등)
 - 인력 : 15명 (관장 1명, 상담원 12명, 심리치료사, 사무원)
 - 기존 수탁기관 :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('14. 3. 25.~'19. 3. 24.)

- 위탁범위 :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전반
 -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
 - 피해아동 상담·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·운영
 -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·치료 및 교육
 -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
 -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
 -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·운영
 -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
- 민간위탁기간 : 2019. 3. 25. ~ 2023. 12. 31. (5년이내)
 - ☞ 최초위탁 : 2014. 3월(공개모집)
- 운영위탁금 : 623백만원 (2019년 예산 기준)
- 수탁기관 선정 :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김창업)

□ 주요 검토사항

-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4년 3월부터 5년간 굿네이버스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, 주요 위탁 업무는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, 피해아동 상담·치료,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,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이 되겠음.
- 민간위탁(재계약) 추진계획을 보면,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9. 3. 25.부터 2023. 12. 31.까지 5년 이내의 기간동안 기존 수탁자인 굿네이버스와 재계약을 통해 민간위탁 할 계획이며, 위탁 예산은 연간 623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(국비 50%, 시비 50%)

□ 검토결과

-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가 개정(2018. 8. 10.) 되면서 민간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(재계약) 운영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음.
- 「아동복지법」 제45조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에 따라 “아동보호전문기관”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재계약하려는 것으로,
- 「아동복지법」 제45조 제4항에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,
- 최초 설치 후 지정되었거나 공모방식을 통해 위·수탁계약을 체결한 수탁법인들에 대해서 다시 민간위탁(재계약) 운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, 법적근거나 절차상 문제는 없음.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 2에는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명시하고 있고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,
- 기존 운영해오던 수탁기관에 다시 재계약으로 5년간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위탁하려는 것임.
- 다만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다시 수탁을 맡김에 따라 자칫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고,

민간위탁 취지에 맞도록 효과적인 예산의 배정과 공정한 집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음.

- 특히,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는 「아동복지법」 제47조에 의거하여 2016년 최초시범평가 후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고, 2019년 중 2차 평가를 할 예정임에 따라 철저한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보건복지부 평가에 대한 결과공개가 꼭 필요하며 올해 예정인 2차 평가에 대한 철저한 조치 요청	평가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음.
위탁기간 동안 수탁법인에 대한 철저한 자체점검 및 평가 필요	철저하게 점검 및 평가하겠음.

5. 토론요지

-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.

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.